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지(‘24.2.)됨에 따라 과기출연기관을 관리기관에 포함하여 관리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안 제2조)

- 나. 기본공간정보를 종전에는 “기본공간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던 것을 “기본공간정보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본공간정보 관리방법을 구체화하여 정함(안 제15조·제15조의2)
- 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위성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 라. 공간정보 기반행정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이·활용 확산과 보안규제 합리화를 위해 5개 분야 보안규제를 개선함(안 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4조의4·제24조의5·제24조의6)
- 바.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 기준 등(안 제26조·제2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중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으로 한다.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간사는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기출연기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통합·활용에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
2.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공간정보
3. 기업 등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
4.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구축·갱신하는 공간정보
5. 그 밖에 공공·민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체계 구축·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를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계획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법 제21조에 따라 표준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본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갱신하면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제15조제4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이하 “국토위성센터”라 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한다.

② 국토위성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보안처리 및 활용
3.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활용·제공
4.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가공·활용 등을 위한 지상국의 구축·운영
5.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정확도 개선 등 품질관리
6. 항공기를 이용한 영상의 촬영 및 현지조사 등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접근불능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체계 운영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8. 국토위성의 도입 및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수집·활용 등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9.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국토위성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갱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는 제외한다.

1. 기존에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지역 또는 종류, 내용을 확대하여 구축하려는 경우

2. 기존에 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정하여 갱신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활용 계획

제19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을 “구축·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디지털트윈국토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할 때에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구축한 디지털트윈국토 중 활용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하여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이하 ‘디지털트윈국토 공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 및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장이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6에 따라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분류기준”을 “세부분류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

준에 따라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가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심사 기준과 보안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또는 협회 중에서”를 “중에서”로, “기관 또는 협회를”

을 “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4(중전의 제24조의3)제1항 중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보안처리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대상 시설이 신규·변경·삭제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보안성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24조의6(보안처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4항에 따라 보안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및 내용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위성의 도입과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토현황 조사 및 공간정보 제작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 업무와 시정명령
5. 법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제24조의6에 따른 보

안처리·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고시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항에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 통합 및 관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지원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 수행
4.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중복투자 사전검토
6. 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디지털트
윈국토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위성의 도입
2. 법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
른 국토위성 관측자료 보안처리 지원
3.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 공간정
보의 생산·제공 지원
4.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가공·활용 등

을 위한 지상국 운영 지원

5. 제1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 및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6.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공간정보품질관리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

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
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
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사항 외에 위탁계약의 체결, 수탁기
관의 지휘·감독, 위탁사무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u><신 설></u>	제2조(관리기관의 범위)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이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 ----- -----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 ----- ----- ----- -----

1. ~ 4. (생략)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 (생략)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우주항공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간사) -----
간사는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생략)

④ ~ ⑥ (생략)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 13. (생략)

② (생략)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과기출연기관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말한다)
2. 지명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

1.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통합·활용에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
 2.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공간정보
 3. 기업 등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
 4.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구축·갱신하는 공간정보
 5. 그 밖에 공공·민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체계 구축·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를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

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
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
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관리계획을 법 제6조제3
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
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
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에 관한 계획을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
책 기본계획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은 기
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
술기준
2. 법 제21조에 따라 표준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

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

<신 설>

제15조의2(기본공간정보 통합관

리)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
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를 구축·갱신하면 1개월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본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운
용성 확보를 위해 제15조제4항
의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평가
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
우 해당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
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술기준-----

-----.

<삭 제>

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이하 “국토위성센터”라 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한다.

② 국토위성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보안처리 및 활용

3.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활용·제공

4.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가공·

활용 등을 위한 지상국의 구축·운영

5.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정확도 개선 등 품질관리

6. 항공기를 이용한 영상의 촬영 및 현지조사 등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접근불능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체계 운영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국토위성의 도입 및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수집·활용 등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9.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국토위성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u>≤신설></u>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갱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는 제외한다. 1. 기존에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지역 또는 종류, 내용을 확대하여 구축하려는 경우 2. 기존에 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정하여 갱신하려는 경우 ② ----- ----- ----- -----
--	--

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6. (생략)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
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 구축·갱신 -----

1. ~ 4. (현행과 같음)

5.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활용 계획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1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
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디지털트윈국토의 효율적인 구
축과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트윈국
토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
 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
 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
 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

③ 관리기관이 디지털트윈국토
 를 구축할 때에는 제15조 및 제
 15조의2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
 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
 이 구축한 디지털트윈국토 중
 활용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하여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이하 ‘디지털
 트윈국토 공공플랫폼’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
 윈국토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국토교
 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간
 정보의 공개목록 및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
 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략)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

다.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

-----.

1.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장이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 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⑤·⑥ (생략)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5. (생략)

<신 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6에 따라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 제2항 및 제3항-----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세부분류기준 -----

4.·5. (현행과 같음)

6.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괴계획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

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가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심사 기준과 보안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중에서-----

----- 기관을 -----

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2. (생략)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의4(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

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보안처리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설>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대상 시설이 신규·변경·삭제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보안성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24조의6(보안처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4항에 따라 보안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및 내용
2. 시정명령의 이유

<신 설>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간객체 등록번호 부여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위성의 도입과 국토위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토현황 조사 및 공간정보 제작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 업무와 시정명령

5. 법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제24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고시

<신 설>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관별 시행
계획 통합 및 관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지원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
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 수행

4.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중복투자
사전검토

6. 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38

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위성의 도입

2. 법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 보안처리 지원

3.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제공 지원

4.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의 가공·활용 등을 위한 지상국 운영 지원

5. 제1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국토위성 관측자료 및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6.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
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
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
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
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
산업협회
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한국공간정보품질관리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사항 외에 위탁계약의 체결,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위탁사무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60